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11.

제안자 :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 발의자	발의일자	경과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0681호)	정진욱의원	2025. 6. 9.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(2025. 8. 26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0939호)	최민희의원	2025. 6. 19.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(2025. 8. 26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1592호)	조인철의원	2025. 7. 21.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(2025. 8. 26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2290호)	이훈기의원	2025. 8. 21.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6차 전체회의(2025. 11. 17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
가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11. 18.)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나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5. 1

1. 24.)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·의결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.

또한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·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.

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8조, 안 제18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신설)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

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(안 제8조제3항).

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,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8조의2 신설).

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안 제25조의2 신설).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지털포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

5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다)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이버범죄

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,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분야의 기관·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·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·안내 및 상담
2.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·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 기관 연계
3.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

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·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디지털포용 기본계획) ① • ② (생 략)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디지털포용 기본계획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<u>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</u> <u>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</u> <u>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</u> <u>사항</u> 5. 「 <u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</u> <u>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<u>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</u> <u>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</u> <u>다)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</u> <u>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</u> 6. ~ 16. (현행 제5호부터 제1 5호까지와 같음) ④ • ⑤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2(<u>디지털취약계층에 대</u> <u>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</u> <u>육)</u>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</u> <u>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</u>
5. ~ 15. (생 략) ④ •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의2(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, 디지털역량지원센터

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
·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
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
하게 할 수 있다.

1.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
방법 · 절차 등 관련 정보의
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
· 안내 및 상담

2.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
고 · 접수와 필요한 서비스
지원 제공기관 연계

3.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
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
위한 교육 · 훈련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
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
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·
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
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
취소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
지정 · 운영 · 관리 및 제4항에
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

	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